

의안번호	제 호
의 결 연 월 일	2017년 월 일 (제 354 회)

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자	의회운영위원장
제안연월일	2017년 2월 일

조례 개정 방침결정문

1. 조례명 :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개정이유

- 상위법령인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개정(2016.1.12.)에 따라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변경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상위 법령에 맞게 변경
 -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서 정한 결산검사 사항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

4. 조례개정안 : 별첨

5. 신·구 조문 대비표 : 별첨

6. 관련법규 : 별첨
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
7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8. 입법예고 여부 : 해당없음

충청북도의회 조례 제 호

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의회 의원” 을 “의원” 으로, “검사위원” 을 “위원” 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제2조에 따른 위원” 을 “위원” 으로, “도의회” 를 “충청북도의회(이하 “도의회” 라 한다)”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자” 를 “사람” 으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(겸임금지 및 결격)” 을 “(겸임금지와 결격)” 으로 하고, 제2항 중 “자는” 을 “사람은” 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위원은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.

제8조 중 “교육감 및” 을 “교육감과” 로 한다.

제9조 중 “도지사 및” 을 “도지사와” 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제4조제2항에 의한” 을 “제4조에 따른” 으로 하고, “실제로 검사” 를 “결산검사” 로 하며, “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” 을 “결산검사 종료일” 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위원의 정수) 결산검사위원(이하 “위원“이라 한다)의 정수는 충청북도회의의원(이하 “의원“이라 한다)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. 이 경우 <u>의회</u> 의원은 <u>검사위원</u> 총수의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.</p>	<p>제2조(위원의 정수) <u>의원</u>···<u>위원</u>··· </p>
<p>제3조(선임방법 및 절차) ① <u>제2조</u>에 따른 위원은 충청북도회의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의 추천에 의하여 <u>도의회</u>에서 선임한다. ② (생략) ③ 도의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<u>자</u> 중에서 위원을 선임하되 그 방법은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에 따른다.</p>	<p>제3조(선임방법 및 절차) ① <u>위원</u>··· <u>충청북도의회</u>(이하 “<u>도의회</u>”라 한다)··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사람</u></p>
<p>제5조(<u>겸임금지</u> 및 <u>결격</u>) ①(생략) ② 도 및 교육청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, 의원의 배우자,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<u>자</u>는 위원이 될 수 없다.</p>	<p>제5조(<u>겸임금지</u>와 <u>결격</u>) ①(현행과 같음) ② <u>사람</u>은</p>

현행	개정안
<p>제7조제1항(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)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세입·세출의 결산 2. 계속비, 명시이월비의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.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.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. 금고의 결산 <p>②(생략)</p>	<p>제7조제1항(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) ① 위원은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.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
<p>제8조(검사협조) 도지사, <u>교육감</u>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, 설명 또는 사업현장 확인을 요청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</p>	<p>제8조(검사협조).....<u>교육감과</u> </p>
<p>제9조(검사의견서의 제출)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<u>도지사 및 교육감</u>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제9조(검사의견서의 제출)..... <u>도지사</u>와..... 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1조(수당의 계산) ① 제10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은 <u>제4조제2항에 의한</u> 위촉기간 중에서 <u>실제로 검사</u> 개시일로부터 <u>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</u>로 한다. 다만, 위촉기간만료 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도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수당을 지급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1조(수당의 계산) ①<u>제4조에 따른</u>..... <u>결산검사</u>..... <u>결산검사 종료일</u>....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84조(결산 검사 사항) ① 감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<개정 2016.1.12.>

1. 결산개요

2. 세입·세출의 결산

3. 재무제표

4. 성과보고서

5. 결산서의 첨부서류

6. 금고의 결산

② 감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,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.

③ 감사위원은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감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지방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결산 검사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.